

# 청 주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4고정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
피 고 인 ○○○  
검 사 송창진(기소), 김건(공판)  
변 호 인 <생략>  
판 결 선 고 2014. 4. 3.

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5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몰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청주시에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

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%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2. 2. 9. 사무실에서 채무자 ●●●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

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간 3,000,000원을 대부를 하면서 연 60%에 해당하는 이자 600,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 총 99명에게 합계 471,950,000원을 대부를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71,175,000원을 받았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 1.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##### 1. ○○○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##### 1. 경찰 압수조서(증거목록 순번 23번)

##### 1. 대부업광고 명함, 대부내역(증거목록 순번 20번), 수사보고(대부업 등록현황 자료 편철), 수사보고(탁상달력 사본 편철), 수사보고(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, 증거목록 순번 38번)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, 제8조 제1항(벌금형 선택)

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### 1. 몰수

형법 제48조 제1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류희상 \_\_\_\_\_